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1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치매는 조기 예방 및 지속적인 진료로 질환의 진행 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서, 이에 치매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치매관리법」 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 해당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3) 입법예고 : 2024. 11. 15. ~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3.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2023. 3. 28., 2024. 1. 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